

인삼 국내 생산현황 및 수출요건

□ 국내 생산 및 수출현황

(단위 : ha, 톤, 천불)

구 분		'10	'11	'12	'13	'14
재배면적(ha)		19,010	17,601	16,174	15,824	3,368
생 산 량(톤)		26,944	26,737	26,057	21,968	20,978
수 출	물 량(톤)	3,298	3,712	4,368	5,118	5,819
	금액(천불)	124,204	189,305	150,827	174,916	183,531
단가/kg	수출단가(불)	37.66	50.99	34.53	34.17	31.54

* 자료원 : 2014 인삼통계자료집, KATI

□ 검역 및 수출요건

- 중국은 5년근 이상의 뿌리삼은 의약품, 인삼가공제품은 보건식품으로 분류되어 뿌리삼은 SFDA(국가약품관리감독국), 가공제품은 위생부의 관리감독을 받음
 - 뿌리삼 : SFDA 수입약재 등록(1차심사→샘플검사→기술평가 및 행정심사) → 수입등록→ 통관지역 검사
 - 가공제품 : 위생부 안전성 평가→ 위생부 심사→ 비준번호 발급
- 2012.8.29일부로 중국 위생부는 5년근 이하 인공재배 인삼에 대하여 신자원식품으로 분류하고 식품으로 관리
- 일본은 대부분 인삼제품을 식품으로 분류하여 지정분석기관의 성분 분석표 제출 시 수출 제한 없음
 - 의약품 등록은 GMP(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) 시설 보유업체만이 가능
- 대만의 경우 뿌리삼은 의약재로 취급하고 있어 한약재 허가서를 구비해야 하며 가공제품은 일반 식품으로 수입 가능